

소기업·소상공인 공제계약 약관

제정 2007년 8월 27일

개정 2007년 10월 10일

개정 2008년 1월 9일

이 약관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 내지 제121조에 따르는 소기업·소상공인공제계약에 관하여 계약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.

제1관 공제계약의 성립과 유지

- 제1조(공제계약의 성립) ①소기업·소상공인공제계약은 공제계약자의 청약과 공제사업자인 중소기업중앙회의 승낙으로 체결되며 공제계약의 체결로써 공제에의 가입이 이루어집니다.(이하 소기업·소상공인공제계약은 “계약”, 공제계약자는 “계약자”, 중소기업중앙회는 “중앙회”라 합니다)
- ②계약의 청약을 하려면 부금월액을 정하여 이에 상당하는 청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. 이 청약금은 계약이 체결된 해당 월의 부금으로 충당됩니다.
- ③중앙회는 계약의 청약을 받은 때에는 청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공제가입증서(공제증권)를 교부하여 드립니다.
- ④중앙회가 계약의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청약금을 납부한 날을 계약일로 보며 그 날부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.
- ⑤중앙회가 청약금을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 드리며, 청약금을 받은 기간에 대하여 <별표4> “기타 지급이율표”에서 정한 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.

- 제2조(청약의 철회) ①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청약금을 납부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.
- ②중앙회는 제1항에 의한 계약자의 청약철회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미 납부한 청약금을 돌려드리며, 청약금 반환이 지체된 기간에 대하여는 <별표4> “기타 지급이율표”에서 정한 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.

제3조(용어의 정의)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.

1. 소기업·소상공인
「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」 제2조(정의)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말합니다.
2. 부금(또는 공제부금)
계약자가 이 계약에 따라 중앙회에 납부하는 금액을 말합니다.
3. 부금월액
계약자가 매월 납부하기로 한 부금액을 말합니다.
4. 부금구분
부금월액을 매 10,000원 단위로 구분한 각 구분을 말합니다.
5. 부금납부월수
부금의 납부를 마치고 해당 부금월의 기간이 경과한 월수
6. 부가공제기준일
계약일의 다음 날부터 매 1년이 되는 각 날을 말합니다.
7. 부금납부기일
계약자가 부금월액을 매월 납부하기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.
8. 공제금
제17조(공제사유) 각 호의 공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중앙회가 계약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.
9. “해약환급금”이라 함은 계약의 해지에 따라 중앙회가 계약자에게 환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.
10. “공제계약대출”이라 함은 중앙회가 이 계약에 따라 계약자가 납부한 부금 합계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자에게 행하는 대출을 말한다.

제4조(공제가입대상) ①공제에 가입하려면 소기업·소상공인의 대표자이면서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.

1. 계약 청약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을 것
2. 계약일 현재 공제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할 것

②제1항의 “소기업·소상공인의 대표자”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(「상법」상의 회사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에 한함)의 대표자를 말하며, 그 지위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어느 하나를 정하여야 합니다.

제5조(공제가입제한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4조(공제가입대상)에 불구하고 공제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.

1.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임의로 계약을 해지한 후 3년이 경과되지

- 아니한 자
2. 부금의 납부를 12회 이상 연체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제금 또는 해약환급금의 지급을 받았거나 지급받으려고 하여 중앙회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 3. 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 제108조(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설치)의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관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하고 있는 자(그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대표자)
 4. 다음의 업종을 영위하는 자
 - 가. 주점업(일반유흥주점업, 무도유흥주점업 및 「식품위생법 시행령」 제7조(영업의 종류)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에 한합니다)
 - 나. 무도장 운영업
 - 다. 도박장 운영업
 - 라. 의료행위 아닌 안마업

제6조(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) ①중앙회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약관 및 청약서 부분을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.

②중앙회가 제1항에 의해 제공될 약관 및 청약서 부분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체결시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(날인(도장을 찍음))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
③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중앙회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부한 부금을 돌려 드리며, 부금을 받은 기간에 대하여 <별표4> “기타 지급이율표”에서 정한 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.

제7조(계약해지) ①계약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
②중앙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
1. 계약자가 부금의 납부를 12회 이상 연체한 때
2. 계약자가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공제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고 한 때

③계약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유(이하 “간주해약사유”라 합니다)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봅니다.

1. 개인사업자의 지위에서 공제에 가입한 계약자가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현물출자를 함으로써 폐업한 때

2. 개인사업자의 지위에서 공제에 가입한 계약자가 그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사업의 전부를 양도함으로써 폐업한 때
3. 법인의 대표자의 지위에서 공제에 가입한 계약자가 제17조(공제사유)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의 사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서 퇴임한 때

제2관 공제부금의 납부(계약자의 주된 의무)

제8조(부금월액) 부금월액은 최저 50,000원부터 최고 700,000원까지로 하되, 10,000원 단위로 합니다.

제9조(부금의 납부) ①계약자는 부금월액을 매 부금납부기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. 다만, 부금납부기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을 부금납부기일로 합니다.

②부금월액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습니다.

제10조(부금월액의 변경) ①계약자가 부금월액의 증액을 신청한 경우 중앙회는 이를 승낙하여야 합니다.

②계약자가 부금월액의 감액을 신청한 경우 중앙회는 계약자에게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승낙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부금월액을 감액한 후 5년 이내에는 다시 감액할 수 없습니다.

1. 사업경영의 현저한 악화
2. 질병 또는 부상
3. 위급한 비용의 지출

제11조(납부기한의 연장) 중앙회는 계약자가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로 부금을 부금납부기일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6개월 이내의 범위 내에서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.

1. 재해를 당하였을 때
2. 입원가료중일 때

제12조(부금납부월수의 통산) ①중앙회는 계약자가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후 15개월 이내에 공제금 또는 해약환급금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다시 공제에 가입하여 부금납부월수의 통산신청을 한 때에는 전·후 계약의 부금납부월수를 통산합니다. 이 경우 종전의 계약은 소멸합니다.

1. 제7조(계약해지)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간주해약사유
 2. 제17조(공제사유)제1호 또는 제3호의 공제사유
- ②제1항의 부금납부월수의 통산신청과 동시에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제4조(공제가입대상)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불구하고 공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.

제13조(부금선납) 계약자는 신청에 의하여 해당 연도분의 부금을 부금납부 기일 이전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부금납부월 이전에 선납하는 부금은 6개월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.

제14조(부금연체) 계약자가 부금을 연체한 때에는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<별표5> “수취이율표”에서 정한 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연체이자를 납부하여야 합니다.

제15조(부금의 변제충당) 중앙회는 계약자가 공제계약대출에 관한 대출금(이하 “공제계약대출금”이라 합니다)을 1년 이상 연체한 경우 납부부금을 공제계약대출금 또는 그 연체이자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.

제16조(비부금반환) 계약자가 제7조(계약해지)제3항 각 호의 사유(간주해약사유) 또는 제17조(공제사유) 각 호의 공제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통지하지 아니하고 부금명목으로 계속 납부한 금액이 있을 경우 중앙회는 그 금액을 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<별표4> “기타 지급이율표”에서 정한 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반환하여 드립니다.

제3관 공제금의 지급(중앙회의 주된 의무)

제17조(공제사유) 중앙회는 계약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제금을 지급합니다.

1. 폐업(법인의 대표자의 지위로 가입한 계약자의 경우는 그 법인의 폐업 또는 해산). 다만, 제7조(계약해지)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합니다.
2. 사망
3. 질병 또는 부상에 의한 법인의 대표자의 지위에서의 퇴임
4. 만 60세 이상으로 부금납부월수가 120개월 이상인 계약자의 공제금 지급청구

제18조(공제금) ①중앙회가 지급하는 공제금은 각 부금구분의 구분공제금의 합계액으로 합니다.

②제1항의 구분공제금은 다음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의 합계액으로 합니다.

1. 제17조(공제사유)제1호 또는 제2호의 공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<별표1> “공제금 지급기준표” 제1란의 「부금구분의 부금납부월수」에 상응하여 동표 제2란에 기재된 금액,
제17조(공제사유)제3호 또는 제4호의 공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표 제1란의 「부금구분의 부금납부월수」에 상응하여 동표 제3란에 기재된 금액
2. 부가공제기준일에 제17조(공제사유) 각 호의 해당 공제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제1호를 적용한 금액(이하 “가정구분공제금”이라 합니다)에 각 부가공제기준일이 속하는 연도의 부가지급률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

③제2항제2호의 부가지급률은 매년마다 가정구분공제금의 총액, 공제자금의 운용수입액·예상액 및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의 전년도 말까지 중앙회가 정하며 중앙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 드립니다.

제19조(공제금의 지급을 받을 자) ①공제금의 지급을 받을 자는 제17조제1호,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계약자로 하고, 동조제2호의 경우에는 계약자의 상속인으로 합니다.

②공제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9조(수급권의 보호)에 의하여 이를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.

제20조(결격) ①고의의 범죄행위로 계약자를 사망하게 한 자는 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. 계약자의 사망 전에 그 사망에 의하여 공제금을 지급받을 자를 고의의 범죄행위로 사망하게 한 자도 또한 같습니다.

②공제금의 일부를 지급받을 자가 제1항의 범죄행위자인 경우에는 그 자에 해당하는 공제금을 제외한 나머지 공제금을 다른 공제금을 지급받을 자에게 지급합니다.

제21조(공제금 등의 반환) 중앙회는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공제금 또는 해약환급금의 지급을 받은 자에게 해당 공제금 등을 반환하게 할 수 있습니다.

제22조(공제금 등의 상계) 중앙회는 계약자 또는 그 상속인 등에게 공제금

등을 지급하는 경우 계약자에 대한 공제계약대출금 및 기타 채권이 있을 때에는 이를 그 지급할 공제금 등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.

제23조(사망의 인정) 제17조(공제사유)제2호(사망)에는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, 선박의 침몰,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(실종의 선고)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.

제24조(해약환급금) ①계약이 해지된 경우 중앙회는 계약자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.

②해약환급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합니다.

1. 제7조(계약해지)제1항 또는 제2항제1호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또는 동조제3항제1호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(계약자가 동호의 법인의 대표자가 된 경우에 한합니다)에는 각 부금구분의 부금납부월수에 상응하여 <별표3> “일반해약환급금 지급기준표” 제2란에 기재된 금액의 합계액
2. 제7조(계약해지)제2항제2호에 따라 중앙회가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각 부금구분의 부금납부월수에 상응하여 동표 제3란에 기재된 금액의 합계액
3. 제7조(계약해지)제3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는 경우(계약자가 동항제1호의 법인의 대표자가 된 경우를 제외합니다)에는 각 부금구분의 구분간주해약환급금의 합계액

③제2항제3호의 구분간주해약환급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의 합계액으로 합니다.

1. <별표2> “간주해약환급금 지급기준표” 제1란의 「부금구분의 부금납부월수」에 상응하여 동표 제2란에 기재된 금액
2. 부가공제기준일(제1회차부터 제3회차까지의 부가공제기준일은 제외합니다. 이하 이 조에서 같습니다)에 제7조(계약해지)제3항 각 호의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제1호를 적용한 금액(이하 “가정구분해약환급금”이라 합니다)에 각 부가공제기준일이 속하는 연도의 제18조(공제금)제3항에 따른 부가지급률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

제4관 공제금 지급 등의 절차

제25조(기준이율의 결정 및 공시) ①이 계약에 관한 지급이율 등 제(諸)이율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이율(이하 “기준이율”이라고 합니다)은 중앙회가 정합니다.

②기준이율은 「매년 1월 1일」에 중앙회가 정하여 매 1년간 확정 적용합니다. 다만, 최초로 정하는 기준이율은 중앙회가 정하는 날부터 위 내용에 따라 다음 기준이율을 정하는 날 전일까지 적용합니다.

③기준이율의 최저한도(이하 “최저보증이율”이라고 합니다)는 <별표1> “공제금 지급기준표”의 기재에 따릅니다.

④중앙회는 기준이율을 중앙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 드립니다.

제26조(공제사유 발생의 통지) 계약자(제17조(공제사유)제2호의 공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 등)는 제7조(계약해지)제3항 각 호의 간주해약사유 또는 제17조(공제사유) 각 호의 공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중앙회에 통지하여야 합니다.

제27조(주소변경통지) ①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중앙회에 알려야 합니다.

②제1항에서 정한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가 중앙회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.

제28조(대표자의 지정) ①공제금, 해약환급금 또는 이 계약에 관한 일체의 지급금·환급금을 지급받을 자(이하 “수급권자”라 합니다)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.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수급권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.

②수급권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중앙회가 수급권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수급권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.

③수급권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.

제29조(공제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) ①수급권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공제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.

1. 청구서(중앙회양식)
2. 공제사유 등을 증명하는 서류(폐업증명서, 사망진단서, 질병·부상진단서, 퇴임증명서, 법인등기부등본, 호적등본 등)
3. 공제가입증서(공제증권)
4. 신분증(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

신분증,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)

5. 기타 수급권자가 공제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

②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1항제2호의 사망진단서 등은 의료법 제3조(의료기관)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.

제30조(공제금 등의 지급) ①공제금 또는 해약환급금은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.

②중앙회는 제29조(공제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)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,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공제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. 다만, 공제금의 경우 공제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.

③중앙회는 공제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공제사유 발생일 또는 계약해지일의 다음 날부터 공제금 또는 해약환급금의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<별표4> “기타 지급이율표”에서 정한 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.

④계약자 또는 수급권자는 제1항의 공제사유의 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,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중앙회의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.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중앙회는 공제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.

⑤중앙회가 공제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제2항의 지급기일 이내에 공제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, 지급예정일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수급권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드립니다.

제31조(공제금의 분할지급) ①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30조(공제금 등의 지급)제1항에 불구하고 계약자의 청구에 의하여 공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할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제17조(공제사유)제2호의 공제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합니다.

1. 분할방식으로 지급받으려는 공제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
2. 계약자에게 제17조(공제사유)제1호 또는 제3호의 공제사유가 발생한 날에 그 자가 만 60세 이상일 것

②계약자가 공제금의 일부액을 분할방식으로 지급받으려는 경우 제1항의 청구는 분할방식으로 지급받으려는 공제금(이하 “분할지급대상액”이라 합니다)을 정하여야 합니다.

③분할방식에 의한 공제금의 지급은 매년 3월, 6월, 9월 및 12월에 합니다.

④분할방식에 의한 공제금의 지급기간(이하 “분할지급기간”이라 합니다)은 계약자의 선택에 의하여 제1항의 청구 후 최초의 지급월로부터 5년, 10년 또는 15년으로 합니다.

⑤분할공제금은 공제금(공제금의 일부액을 분할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분할지급대상액)을 분할지급횟수로 균등분할한 금액으로 하며, 분할공제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공제사유 발생일의 다음 날부터 분할공제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<별표4> “기타 지급이율표”에서 정한 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.

⑥제1항에 따라 공제금의 일부액을 분할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당해 공제금 전액에서 분할지급대상액을 차감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.

제32조(분할공제금의 일괄지급) ①중앙회는 공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할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자에게 잔여 분할공제금을 일괄하여 지급합니다.

1. 계약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
2. 계약자가 제11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잔여 분할공제금의 일괄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계약자

②제1항의 잔여 분할공제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공제사유 발생일의 다음 날부터 일괄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<별표4> “기타 지급이율표”에서 정한 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.

제33조(계약내용의 교환) 중앙회는 계약의 체결 및 관리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공제사업자·보험회사·금융회사 및 공제·보험·금융관련 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중앙회는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3조(개인신용 정보의 제공·활용에 대한 동의)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(개인신용정보의 제공·활용에 대한 동의 등)의 규정을 따릅니다.

1. 계약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
2. 계약일, 부금 등 계약내용
3. 공제금과 각종 급부 금액 및 지급사유 등 지급내용
4. 계약자의 질병·부상에 관한 정보

제5관 공제계약대출

제34조(대출운용원칙) 공제계약대출은 계약자의 사업자금 또는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무담보·무보증으로 운용합니다.

제35조(대출자격) 계약자가 공제계약대출을 받기 위하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.

1. 부금납부월수가 12개월 이상일 것
2. 부금의 납부를 연체하지 아니할 것
3. 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 제108조(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설치)의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관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하지 아니할 것

제36조(대출한도) ①공제계약대출의 한도(이하 “대출한도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합니다.

1. 계약자의 납부부금 합계액
2. 대출신청일에 계약이 제7조(계약해지)제2항제1호의 사유로 계약해지된 것으로 보아 제24조(해약환급금)제2항제1호에 따라 산출한 해약환급금에서 원천징수세액예상액을 차감한 금액

②공제계약대출금은 최저 100만원부터 10만원 단위로 합니다.

제37조(대출조건) ①공제계약대출의 기간(이하 “대출기간”이라 한다)은 1년으로 하며 대출실행일의 다음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을 대출금의 상환기일(이하 “상환기일”이라 한다)로 합니다. 다만, 중앙회는 계약자의 신청에 따라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.

②공제계약대출의 이율(이하 “대출이율”이라 한다)은 <별표5> “수취이율표”와 같습니다.

③공제계약대출의 이자는 대출실행시에 수취합니다.

④대출이율이 변경되기 전에 실행된 대출은 그 변경되기 전의 대출이율을 적용합니다. 다만, 제1항에 따른 대출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대출이율을 적용합니다.

⑤제4항 단서에 따라 대출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출의 상환기일 현재 제35조(대출자격)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.

⑥계약자가 공제계약대출의 상환기일 전에 상환하는 경우는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여야 합니다.

제38조(상환연체이자) 계약자가 대출금의 상환을 연체한 때에는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<별표5> “수취이율표”에서 정한 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연체이자를 납부하여야 합니다.

제39조(변제충당순서) 공제계약대출에 관한 상환금액이 그 대출채무의 전

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대출금, 연체이자 및 기타 비용의 순서로 그 변제에 충당합니다.

제40조(기한의 이익 상실) 계약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자에 대한 통지나 최고 절차 없이 공제계약대출에 관한 일체 채무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며 계약자는 대출금 등 일체의 채무를 즉시 상환하여야 합니다. 계약자가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에는 그 법인에 제6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또한 같습니다.

1. 제7조(계약해지)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때
2. 제17조(공제사유) 각 호의 공제사유가 발생한 때
3. 대출한도의 범위 안에서 2건 이상의 공제계약대출을 받은 경우 타 대출금의 상환을 연체한 때
4.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공제계약대출을 받은 때
5. 공제계약대출에 관한 약정에 위반한 때
6. 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 제108조(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설치)의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관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그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

제6관 분쟁조정 등

제41조(분쟁의 조정)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계약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은 중앙회에 설치된 「소기업·소상공인공제분쟁조정위원회」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제42조(관할법원)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중앙회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. 다만, 중앙회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.

제43조(단체보험의 가입) ①중앙회는 계약자의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발생시에 계약자가 추가 보험금의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보험계약조건으로 단체보험에 가입하여 드립니다.

1. 보험기간은 공제계약일부터 탈퇴일(공제사유 발생일 및 공제계약의 해지일을 말합니다)까지로 합니다.
2. 보험가입금액은 부금월액의 150배의 범위 안에서 중앙회가 정합니다.
3. 기타 보험계약조건은 중앙회가 정하며 보험기간 중에 변동될 수 있

습니다.

②계약자가 부금납부를 연체한 경우에는 제1항의 단체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재가입이 안될 수 있습니다.

제44조(준거법)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.

<별표1> “공제금 지급기준표”

제1란 (부금납부월수 구분)	제2란 (제1종 공제금) (약관 제18조제2항제1호 전단)	제3란 (제2종 공제금) (약관 제18조제2항제1호 후단)
공제사유가 발생한 때에 부금구분의 부금납부월수가 3개월 이하인 경우	부금구분의 납부부금의 50%	부금구분의 납부부금의 50%
공제사유가 발생한 때에 부금구분의 부금납부월수가 4개월 이상 6개월 이하 인 경우	부금구분의 납부부금의 80%	부금구분의 납부부금의 80%
공제사유가 발생한 때에 부금구분의 부금납부월수가 7개월 이상인 경우	부금구분의 납부부금을 각 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공제사유 발생일까지의 기 간에 대하여 아래 「차등지급이율표」 ^{주)} 의 지급이율로 부리 적립한 금액	부금구분의 납부부금을 각 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공제사유 발생일 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기준이율로 부리 적립한 금액

주) 1. 차등지급이율표

번호	적용(부리)기간	지급이율
1.	계약일의 다음 날부터 15년간	기준이율 + 연 0.3%
2.	위 1.항의 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간	기준이율 + 연 0.25%
3.	위 2.항의 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간	기준이율 + 연 0.2%
4.	위 3.항의 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간	기준이율 + 연 0.15%
5.	위 4.항의 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간	기준이율 + 연 0.1%
6.	위 5.항의 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간	기준이율 + 연 0.05%
7.	위 6.항의 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 계산일까지의 기간	기준이율

2. 기준이율은 매년 1월 1일에 중앙회가 정하며(매 1년간 확정 적용됩니다), 「소상공인공제공시」로 분회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. 기준이율이 변경되면 공제금도 변경됩니다.
3. 기준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연 2.0%로 합니다.
4.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합니다.

<별표2> “간주해약환급금 지급기준표”

제1란 (부금납부월수 구분)	제2란 (간주해약환급금) (약관 제24조제3항제1호)
간주해약사유가 발생한 때에 부금구분의 부금납부월수가 12개월 이하인 경우	부금구분의 납부부금의 30%
간주해약사유가 발생한 때에 부금구분의 부금납부월수가 13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인 경우	부금구분의 납부부금
간주해약사유가 발생한 때에 부금구분의 부금납부월수가 37개월 이상인 경우	<p>부금구분의 납부부금을 각 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간주해약사유 발생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기준이율로 부리 적립한 금액</p> <p>다만, 계약일의 다음 날부터 36개월간(이하 이 표에서 “부리공백기간”이라 합니다)은 지급이자를 부리하지 아니하며 부리공백기간 동안에 납부한 부금에 대한 지급이자 계산의 기산일은 부리공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로 합니다.</p>

- 주) 1. 기준이율은 매년 1월 1일에 중앙회가 정하며(매 1년간 확정 적용됩니다), 「소상공인공제공사」로 본회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. 기준이율이 변경되면 환급금도 변경됩니다.
2. 기준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별표1의 기재와 같습니다.
3.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합니다.
4. 약관 제7조제3항제1호의 간주해약사유(법인설립을 위하여 현물출자를 하여 폐업) 중 계약자가 그 법인의 대표자가 된 때에는 간주해약환급금이 아닌 <별표3> “일반해약환급금표” 제2란의 일반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.

<별표3> “일반해약환급금 지급기준표”

제1란 (부금납부월수 구분)	제2란 (일반해약환급금) (약관 제24조제2항제1호)	제3란 (일반해약환급금) (약관 제24조제2항제2호)
계약해지한 때에 부금구분의 부금납부월수가 1개월 이상 12개월 이하인 경우	부금구분의 납부부금의 30.0%	좌란 산출금액의 80%
계약해지한 때에 부금구분의 부금납부월수가 13개월 이상 24개월 이하인 경우	부금구분의 납부부금의 80.0%	좌란 산출금액의 80%
계약해지한 때에 부금구분의 부금납부월수가 25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인 경우	부금구분의 납부부금의 82.5%	좌란 산출금액의 80%
계약해지한 때에 부금구분의 부금납부월수가 37개월 이상 48개월 이하인 경우	부금구분의 납부부금의 85.0%	좌란 산출금액의 80%
계약해지한 때에 부금구분의 부금납부월수가 49개월 이상 60개월 이하인 경우	부금구분의 납부부금의 87.5%	좌란 산출금액의 80%
계약해지한 때에 부금구분의 부금납부월수가 61개월 이상 72개월 이하인 경우	부금구분의 납부부금의 90.0%	좌란 산출금액의 80%
계약해지한 때에 부금구분의 부금납부월수가 73개월 이상 84개월 이하인 경우	부금구분의 납부부금의 92.5%	좌란 산출금액의 80%
계약해지한 때에 부금구분의 부금납부월수가 85개월 이상 96개월 이하인 경우	부금구분의 납부부금의 95.0%	좌란 산출금액의 80%
계약해지한 때에 부금구분의 부금납부월수가 97개월 이상 108개월 이하인 경우	부금구분의 납부부금의 97.5%	좌란 산출금액의 80%
계약해지한 때에 부금구분의 부금납부월수가 109개월 이상 120개월 이하인 경우	부금구분의 납부부금의 100.0%	좌란 산출금액의 80%
계약해지한 때에 부금구분의 부금납부월수가 121개월 이상 132개월 이하인 경우	부금구분의 납부부금의 102.5%	좌란 산출금액의 80%
계약해지한 때에 부금구분의 부금납부월수가 133개월 이상 144개월 이하인 경우	부금구분의 납부부금의 105.0%	좌란 산출금액의 80%
계약해지한 때에 부금구분의 부금납부월수가 145개월 이상 156개월 이하인 경우	부금구분의 납부부금의 107.5%	좌란 산출금액의 80%
계약해지한 때에 부금구분의 부금납부월수가 157개월 이상 168개월 이하인 경우	부금구분의 납부부금의 110.0%	좌란 산출금액의 80%
계약해지한 때에 부금구분의 부금납부월수가 169개월 이상 180개월 이하인 경우	부금구분의 납부부금의 112.5%	좌란 산출금액의 80%
계약해지한 때에 부금구분의 부금납부월수가 181개월 이상 192개월 이하인 경우	부금구분의 납부부금의 115.0%	좌란 산출금액의 80%
계약해지한 때에 부금구분의 부금납부월수가 193개월 이상 204개월 이하인 경우	부금구분의 납부부금의 117.5%	좌란 산출금액의 80%
계약해지한 때에 부금구분의 부금납부월수가 205개월 이상 216개월 이하인 경우	부금구분의 납부부금의 120.0%	좌란 산출금액의 80%
계약해지한 때에 부금구분의 부금납부월수가 217개월 이상 228개월 이하인 경우	부금구분의 납부부금의 122.5%	좌란 산출금액의 80%
계약해지한 때에 부금구분의 부금납부월수가 229개월 이상 240개월 이하인 경우	부금구분의 납부부금의 125.0%	좌란 산출금액의 80%
계약해지한 때에 부금구분의 부금납부월수가 241개월 이상 252개월 이하인 경우	부금구분의 납부부금의 127.5%	좌란 산출금액의 80%
계약해지한 때에 부금구분의 부금납부월수가 253개월 이상 264개월 이하인 경우	부금구분의 납부부금의 130.0%	좌란 산출금액의 80%
계약해지한 때에 부금구분의 부금납부월수가 265개월 이상 276개월 이하인 경우	부금구분의 납부부금의 132.5%	좌란 산출금액의 80%
계약해지한 때에 부금구분의 부금납부월수가 277개월 이상 288개월 이하인 경우	부금구분의 납부부금의 135.0%	좌란 산출금액의 80%
계약해지한 때에 부금구분의 부금납부월수가 289개월 이상 300개월 이하인 경우	부금구분의 납부부금의 137.5%	좌란 산출금액의 80%
계약해지한 때에 부금구분의 부금납부월수가 301개월 이상 312개월 이하인 경우	부금구분의 납부부금의 140.0%	좌란 산출금액의 80%
계약해지한 때에 부금구분의 부금납부월수가	부금구분의 납부부금의 142.5%	좌란 산출금액의 80%

313개월 이상 324개월 이하인 경우		
계약해지한 때에 부금구분의 부금납부월수가 325개월 이상 336개월 이하인 경우	부금구분의 납부부금의	145.0% 좌란 산출금액의 80%
계약해지한 때에 부금구분의 부금납부월수가 337개월 이상 348개월 이하인 경우	부금구분의 납부부금의	147.5% 좌란 산출금액의 80%
계약해지한 때에 부금구분의 부금납부월수가 349개월 이상 360개월 이하인 경우	부금구분의 납부부금의	150.0% 좌란 산출금액의 80%
계약해지한 때에 부금구분의 부금납부월수가 361개월 이상 372개월 이하인 경우	부금구분의 납부부금의	152.5% 좌란 산출금액의 80%
계약해지한 때에 부금구분의 부금납부월수가 373개월 이상 384개월 이하인 경우	부금구분의 납부부금의	155.0% 좌란 산출금액의 80%
계약해지한 때에 부금구분의 부금납부월수가 385개월 이상 396개월 이하인 경우	부금구분의 납부부금의	157.5% 좌란 산출금액의 80%
계약해지한 때에 부금구분의 부금납부월수가 397개월 이상 408개월 이하인 경우	부금구분의 납부부금의	160.0% 좌란 산출금액의 80%
계약해지한 때에 부금구분의 부금납부월수가 409개월 이상 420개월 이하인 경우	부금구분의 납부부금의	162.5% 좌란 산출금액의 80%
계약해지한 때에 부금구분의 부금납부월수가 421개월 이상 432개월 이하인 경우	부금구분의 납부부금의	165.0% 좌란 산출금액의 80%
계약해지한 때에 부금구분의 부금납부월수가 433개월 이상 444개월 이하인 경우	부금구분의 납부부금의	167.5% 좌란 산출금액의 80%
계약해지한 때에 부금구분의 부금납부월수가 445개월 이상 456개월 이하인 경우	부금구분의 납부부금의	170.0% 좌란 산출금액의 80%
계약해지한 때에 부금구분의 부금납부월수가 457개월 이상 468개월 이하인 경우	부금구분의 납부부금의	172.5% 좌란 산출금액의 80%
계약해지한 때에 부금구분의 부금납부월수가 469개월 이상 480개월 이하인 경우	부금구분의 납부부금의	175.0% 좌란 산출금액의 80%
계약해지한 때에 부금구분의 부금납부월수가 481개월 이상 492개월 이하인 경우	부금구분의 납부부금의	177.5% 좌란 산출금액의 80%
계약해지한 때에 부금구분의 부금납부월수가 493개월 이상 504개월 이하인 경우	부금구분의 납부부금의	180.0% 좌란 산출금액의 80%
계약해지한 때에 부금구분의 부금납부월수가 505개월 이상 516개월 이하인 경우	부금구분의 납부부금의	182.5% 좌란 산출금액의 80%
계약해지한 때에 부금구분의 부금납부월수가 517개월 이상 528개월 이하인 경우	부금구분의 납부부금의	185.0% 좌란 산출금액의 80%
계약해지한 때에 부금구분의 부금납부월수가 529개월 이상 540개월 이하인 경우	부금구분의 납부부금의	187.5% 좌란 산출금액의 80%
계약해지한 때에 부금구분의 부금납부월수가 541개월 이상 552개월 이하인 경우	부금구분의 납부부금의	190.0% 좌란 산출금액의 80%
계약해지한 때에 부금구분의 부금납부월수가 553개월 이상 564개월 이하인 경우	부금구분의 납부부금의	192.5% 좌란 산출금액의 80%
계약해지한 때에 부금구분의 부금납부월수가 565개월 이상 576개월 이하인 경우	부금구분의 납부부금의	195.0% 좌란 산출금액의 80%
계약해지한 때에 부금구분의 부금납부월수가 577개월 이상 588개월 이하인 경우	부금구분의 납부부금의	197.5% 좌란 산출금액의 80%
계약해지한 때에 부금구분의 부금납부월수가 589개월 이상인 경우	부금구분의 납부부금의	200.0% 좌란 산출금액의 80%

- 주) 1. 위 표 제2란의 일반해약환급금은 (i)계약자가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거나(약관§7①) (ii) 개인사업자인 계약자가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현물출자하여 폐업(약관§7③i)하고 그 법인의 대표가가 된 경우 또는 (iii)계약자가 부금을 12회 이상 연체하여 중앙회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(약관§7②i)에 지급합니다.
2. 위 표 제3란의 일반해약환급금은 계약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제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고 하여 중앙회가 계약을 해지한 경우(약관§7② ii)의 환급금입니다. 다만, 계약자에게 이미 지급된 금액이 있을 경우 계약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.

<별표4> “기타 지급이율표”

구분	적용(부리)대상	적용(부리)기간		지급이율
청약금을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	청약금 (약관 제1조제5항)	청약금을 받은 기간		기준이율
청약철회 신청을 한 경우	청약금 (약관 제2제2항)	청약철회 신청을 받은 후 청약금 반환이 지체된 기간		기준이율
계약이 취소된 경우	부금납부액 (약관 제6조제3항)	부금을 받은 기간		기준이율
간주해약사유 또는 공제사유가 발생한 후 계속 부금 상당액을 납부한 경우	부금초과금액 (약관 제16조)	부금초과금액을 받은 기간	1년 이내	기준이율의 1/2
			1년 초과 기간	기준이율의 1/4
계약이 해지된 경우	해약환급금 (약관 제30조제3항)	해약일 다음 날부터 해약환급금을 청구한 날까지의 기간	1년 이내	기준이율의 1/2
			1년 초과 기간	기준이율의 1/4
		해약환급금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	기준이율 + 연 1%	
공제사유가 발생한 경우	공제금 (약관 제30조제3항)	공제사유 발생일의 다음 날부터 공제금 청구일까지의 기간	1년 이내	기준이율의 1/2
			1년 초과 기간	기준이율의 1/4
		공제금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	기준이율 + 연 1%	
공제금을 분할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	분할공제금 (약관 제31조제5항)	공제사유 발생일의 다음 날부터 분할공제금 청구일까지의 기간	1년 이내	기준이율의 1/2
			1년 초과 기간	기준이율의 1/4
		분할공제금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	기준이율	
		분할공제금 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	기준이율 + 연 1%	
지급월이 미도래한 분할공제금을 일괄하여 지급하는 경우	잔여 분할공제금 (약관 제32조제2항)	분할공제금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직전 분할공제금 지급일까지의 기간	기준이율	
		직전 분할공제금 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일괄지급 청구일까지의 기간	기준이율의 1/2	
		일괄지급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일괄지급일까지의 기간	기준이율 + 연 1%	

- 주) 1. 기준이율은 매년 1월 1일에 중앙회가 정하며(매 1년간 확정 적용됩니다), 「소상공인공제공사」로 본회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. 기준이율이 변경되면 지급이자도 변경됩니다.
2. 기준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별표1의 기재와 같습니다.
3.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합니다.
4. 지급기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을 지급기일로 합니다.
5. 계약자 등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공제금 등의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<별표5> “수취이율표”

구분		적용(부리)대상	적용(부리)기간	수취이율
부금연체이율	부금을 연체한 후 납부한 경우	연체부금 (약관 제14조)	부금납부기일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	연 4.0%
대출이율	계약자에게 대출하는 경우	대출금 (약관 제37조 제2항)	대출실행일의 다음 날부터 대출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	기준이율 + 연 3.0%
상환연체이율	계약자가 대출금을 연체한 경우	연체대출금 (약관 제38조)	대출금 상환기일의 다음 날부터 대출금 상환일까지의 기간	기준이율 + 연 5.0%

- 주) 1. 기준이율은 매년 1월 1일에 중앙회가 정하며(매 1년간 확정 적용됩니다), 「소상공인공제공시」로 본회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. 기준이율이 변경되면 수취이자도 변경됩니다.
2. 수취이자의 계산은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합니다.
3. 납부기일 또는 상환기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을 납부기일 또는 상환기일로 합니다.